

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

청 구 인 ○ ○ ○ (전화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후견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등록기준지(국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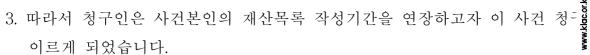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2014. 00. 00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법원 20○○느단0000호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청구인은 20〇〇. 〇〇. 〇〇.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,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재산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


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 각 1통

1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

1통

1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1통

1. 기타(소명자료)

○통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○ ○ ○ (인)

			Or Kull	N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)의 주소지 가정법원			
청구권자	후견인으로 선임된 자 (민법 제941조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42조, 가사소송법 제2조 제 44조 제1의2호	-,
비 용	• 인지액 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• 송달료 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	